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8. 23 선고 2021가단14943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호은, 문인정

변 론 종 결 2022. 7. 12.

판 결 선 고 2022. 8. 2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1. 7. 26.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60,469,497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기재 채권 중 60,469,497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학교법인 D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주식회사 C(이하 'C'이라고 한다)은 2021. 6. 28. 학교법인 D(이하 'D'라고 한다)로부터 'E대학교 종합관 1, 2층 리모델링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고 한다)'를 도급받아 공사대금채권(이하 '이 사건 공사대금채권'이라 한다)을 가지고 있다.

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C으로부터 목자재공사를 하수급받아 시공한 하수급인이다.

피고는 C과 사이에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하수급인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2021.

7. 26.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47,062,200원에 관하여 채권양수도계약(이하 '이 사건 채권양도'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다. C은 2021. 8. 3. D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.

원고는 2019. 4. 5. F병원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공사를 C으로부터 하수급받은 회사로서,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36763호로 위 공사대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. 5. 29.

'C은 원고에게 106,7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명령은 2019. 7. 9.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, 2,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주장의 요지

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인 C에게 채권을 재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D에 채권양도 통지할 것을 구한다.

3. 판단

살피건대, 앞서의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.

C은 원고와 하수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에 대한 하도급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렸는데, 건축공사를 계속 수주 받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비롯하여 다수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.

이 사건 채권양도는, 하수급인의 일의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궁극적으로 보유한 도급인 D가 피고 등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채무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주된 취지인바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권양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.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증가된 적극재산은 상당 부분 하수급인이 그 맡은 바를 완성함으로써 기여한 것이고, 이 사건 채권양도 금액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채무 총액과 같아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C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그 법률행위 이전보다 부족해지는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.

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목적과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 사이의 일련의 관계, 그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자산 증가의 과정, 이를 통한 사업 계속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의 사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최혜승

채권의 표시

주식회사 []이 학교법인 []
[]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"[]대학교 종합관 1,2층 리
모델링 공사"에 관한 공사대금채권(채권금액 247,062,200원). 끝.

